

## 9. 연구전담교원 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구전담교원의 자격, 임용기간, 계약조건, 기타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전임교원 중 연구전담교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교원의 직급) 연구전담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.

제4조(자격) ① 연구전담교원은 특정 과제의 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한 자로서 교원신규채용세칙 제5조(채용자격기준)에 충족하는 자로 임용 한다.

② 연구전담교원은 본연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 할 수 있으며 최소 강의시수는 계약으로 정한다. (2019.4.24. 개정)

제5조(임용기간 및 재계약) ① 연구전담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일 직급에서 임용재계약을 제청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동일직급에서 임용재계약을 할 수 있다. (2019.4.24. 개정)

② 신규임용의 경우 2년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임용 할 수 있다. (2019.4.24. 개정)

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한 연구점수 연당 최저 20점을 충족하고 연당 15점 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지)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.(2019.4.24. 개정)(2022.6.21. 개정)

④ 재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다.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재임용 탈락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(2019.4.24. 개정)

제6조(신규임용)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신규채용세칙에 준한다.

②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

③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전조의 임용기간 이외에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약정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제7조(복무) ① 연구전담교원은 연구년, 파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연구전담교원은 타 직종 및 기관의 전임의 직을 수행 할 수 없다.

③ 연구 및 사업 성과물의 권리는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8조(처우) ① 연구전담교원의 보수는 해당 교외연구비에서 책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연구전담교원은 경력과 업적을 심사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12개월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.

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직장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, 퇴직금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④ 임용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는 본 대학교 교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연구전담교원은 임용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고된 교내연구비 지원 과제 중 '학술논문'에만 지원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물은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술논문 게재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 (2019.4.24. 개정)

제9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5조제3항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교원의 재임용 심의부터 시행한다.

